

## 상호 협력을 위한 교류 협약서

서울교육대학교, 한국체육대학교,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하고, 각 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상호 이해와 협력의 폭을 넓히며, 대학 간 자원 공동 활용 및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.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각 대학교 간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자원 공동 활용 및 공동교육과정 운영 등 상호 교류와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본원칙) 각 대학교는 상호 협력하여 공동 연구 및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제 규정을 존중하고 호혜평등의 원칙을 준수한다.

제3조(협력분야) 각 대학교는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 상호 협력함은 물론 이를 더욱 발전시키도록 노력한다.

1. 공동 연구 수행 및 공동 학술회의·학술대회 개최 등 학술연구 교류
2. 교육 및 연구 프로그램 공동 개발·운영
3. 공동교육과정 개발 운영 및 학점 교류
4. 교육 및 행정 분야 인력의 상호 교류
5. 강의실, 도서관, 기숙사 등 시설 및 연구 장비와 기자재의 공동 활용
6. 그 밖의 상호협력에 필요한 협조

제4조(비밀엄수) 이 협약과 관련된 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상대 기관의 비밀 사항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.

제5조(협정기간) 이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. 또한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협약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효력은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된다.

제6조(협약의 변경 및 해지) ① 각 대학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협약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이 해지된다.

1. 각 대학교가 협약의 해지를 합의하였을 경우
2. 어느 한 기관의 협약 위반으로 다른 기관이 협약의 폐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후 1개월이 경과한 경우

② 제1항에 따라 이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상호 협력이 진행 중인 사항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.

제7조(효력발생) 각 대학교는 이 협약서를 3부 작성하여 상호 서명 후 각각 1부씩 보관하며, 협약서의 효력은 각 대학교 총장이 서명한 날로부터 발생한다.

제8조(그 밖의 사항) 이 협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해석상 의의가 있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2017년 2월 24일

서울교육대학교

총장 김 경 성

김 경 성

한국체육대학교

총장 김 성 조

김 성 조

서울과학기술대학교

총장 김 종 호

김 종 호